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65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2. 제 출 일: 2026. 1. 20.
3. 회 부 일: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허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출국대기소’ 정의를 신설하여 송환대상외국인 중 권리구제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자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 외국인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출입국항 밖에서 대기할 수 시설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18호),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혹은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출국대기소에 대기할 수 있게 하며(안 제76조의2제2항), ③ 지방출입국·최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고(안 제76조의2제3항), ④ ‘출국대기소’의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임(안 제7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출국대기소”란 지방출입국· <u>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u> <u>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이</u> <u>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u> <u>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u> <u>등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u>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생략)

<신 설>

<신 설>

②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

자,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 밖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자,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실 · 출국대기소(이하 “송환대기장소”이라 한다)에서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출국대기실 및 출국대기소의 -----안전대책, -----

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u>출국대기실</u>”로 본다.	----- -.----- ----- “<u>출국대기실</u>” 또는 “<u>출국대기소</u>”----- -----.
③ (생략)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u>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u>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u>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항의</u> ----- ----- ----- ----- ----- ----- ----- -----.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u>출국대기실</u>”로 본다.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출국대기실</u>” 또는 “<u>출국대기소</u>”-----.

2. 출국 대기 시설 운영 개요

현행법은 입국불허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등 송환대상외국인¹⁾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항에 설치한 외국인 출국 대기 시설을 ‘출국대기실’로 정의하고 있음²⁾.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고,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 혹은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항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음³⁾.

전국 공항만의 출국대기실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국제공항과 평택항에 총 11개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고, 인천공항의 경우 1,525㎡면적에 연간 21,051명의 송환명령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은 351㎡에 5,265명, 제주공항은 440㎡에 4,536명으로 총 2,617㎡ 규모에 연간 31,473명이 수용되고 있음⁴⁾.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 2. 삭제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4) 수용 적정 인원은 「법무시설기준규칙」 근거한 외국인보호소 혼거실(1인당 6.6㎡) 기준 준용하여

【 전국 공항만 출국대기실 설치 현황 】

공항만	면적 (㎡)	수용적정인원 (명)	일일송환명령 (명)	연간송환명령 (명)	주요시설
인천공항 T1(2층)	499	76	58	21,051	대기실, 수면실,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 등
인천공항 T1(3층)	427	65			
인천공항 T2	599	91			
김해공항	351	53	14	5,265	
제주공항	440	57	12	4,536	
김포공항	119	12	1.1	409	
청주공항	37	6	0.3	103	
대구공항	39	8	0.3	109	
무안공항	44	7	0	0	
양양공항	44	7	0	0	
평택항	18	3	0	0	
합계	2,617	385	85.7	31,473	

* 자료: 법무부

한편, 출국대기실 이용자 중 노약자 및 영유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총 33,222명 중 342명, 2024년 총 31,196명 중 393명으로 전체 이용자 대비 약 1%대에 해당되고, 소송 등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3년 60명, 2024년 50명으로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⁵⁾.

산출하였고, 일일 송환명령, 연간 송환명령은 2024년 기준임(법무부 제공 자료).

5) 연간송환명령과 출국대기실 이용자 현황 차이 발생 사유 : ①출국대기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송환되는 경우, ②입국불허 후 송환명령을 받았으나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③입국불허 후 난민신청으로 출국대기실이 아닌 난민대기실로 이동하여 난민회부 결정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 있음.

【 전체 이용자 중 노약자, 영유아 및 구제절차 진행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이용자	74,121	10,525	624	23,952	33,222	31,196	20,639
노약자 및 영유아	325	75	44	135	342	393	337
소송 등 구제절차 진행자	7	2	1	25	60	50	38

* 자료: 법무부

3. 개정안의 검토

최근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언급되고,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나 노약자 등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부실 사례가 보고되는 등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⁶⁾.

아울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출국대기실 장기 거주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공항 밖 별도 시설을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음⁷⁾⁸⁾.

6) 「"반팔 티셔츠 하나로 8개월 버텼다"...'공항난민' 된 이들, 원일」, 중앙일보, 2025.02.20.

「공항 '햄버거 끼니' 외국인...인권 침해 진정」, KBS뉴스 2025..09.25.

「난민심사도 못하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경향신문, 2025.10.24.

7) 「출국대기실 장기 거주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해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하고 처우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3.10.30.)

8) 이 밖에도 동 결정문에는 ‘국회의장에게, 공항 밖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939)’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동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출국대기실 장기 거주 송환대상외국인 처우 개선 필요 결정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 2023. 10. 30. (23진정00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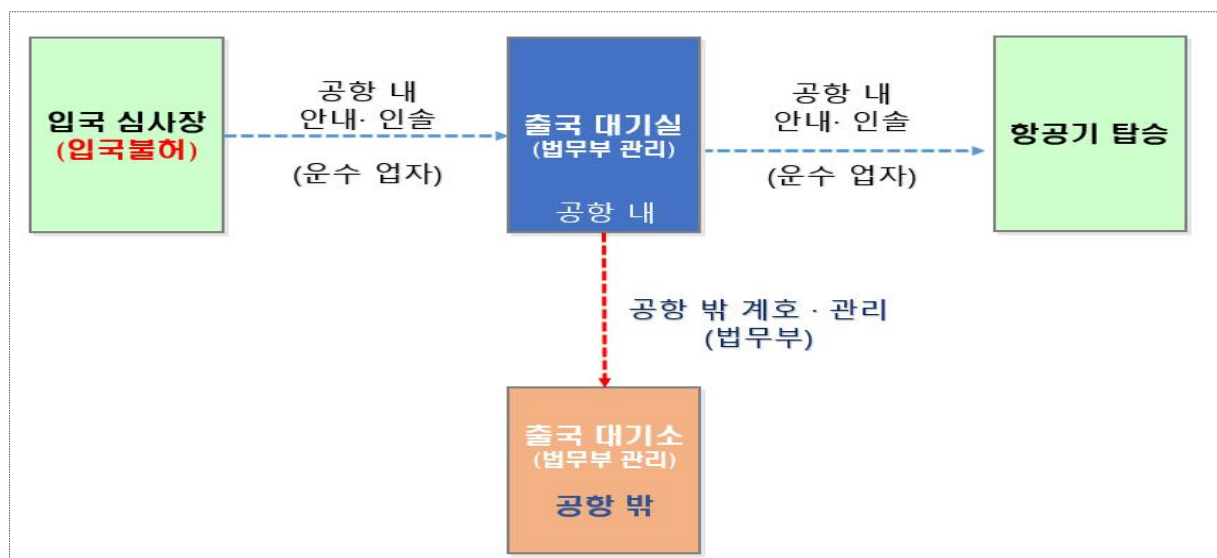
○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등으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 및 휴식 공간, 식단, 운동, 의료지원 등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

○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기 이전이라도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식단 및 주거환경 등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대기할 가능성이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 외국인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인도적 가치 실현 및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 할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 송환 절차도 】



* 자료: 법무부

다만, 출입국항 밖에 설치하게 될 출국대기소는 출입국항 내에 설치된 출국대기실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출국대기소를 설치할 지역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송환대상외국인들이 인천공항 내의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공항의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난 사건⁹⁾을 고려할 때 출입국항 밖에 머무르게 될 송환대상외국인의 탈출·도주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폐쇄성과 인도적 처우를 위한 개방성 간의 조화로운 운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안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관리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출국대기실 이용자 대비 약 1.1%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400명 가량의 대상자를 위해 출입국항 밖에 마련하는 출국대기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건물 확보, 인력 증원, 시설 확충 등 국가 재정소요를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용성 요소를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해 보임¹⁰⁾.

문 의 처
02)6788-5057

9) 「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서 도주…10대 외국인도 구속」, 연합뉴스, 2023.03.31.

10) 현재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고,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사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제2118939호)의 비용추계서에는 예산 추계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